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1692
------------	------

2024. 04. 30.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24. 04. 03. 최재란 의원 발의 (20243. 04. 08. 회부)

## 2. 제안이유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성과 기반의 사무국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예정 또는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사업 계획서와 사업 결과 및 사업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사업 결과'를 추가하고, '사업 계획서와 사업 결과 및 사업 정산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17조제5항)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이하 “기구”)(붙임2 참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에 ‘사업 결과’를 추가하고, ▲ 시의회에 제출한 문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2024년 4월 3일 최재란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개정안 주요내용(안 제17조제5항)>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출문서 (시장 → 시의회)	사업계획서 사업정산서	사업계획서 사업정산서 <b>사업결과</b>	제출문서 추가
보고문서 (시장 → 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	<b>사업계획서</b> <b>사업정산서</b> <b>사업결과</b>	보고의무 신설

- 서울시는 기구 설립(2010.9.7.) 이후<sup>1)</sup> 2013년까지 시에서 사무국을 직접 운영해 오다가 2014년 1월 사무국을 독립시킨 이후, 국제부담금 및 공무원 파견 등 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sup>2)</sup>에 근거하여 지원해 오고 있음(붙임3 참고).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 ① (생략)</b> 1. ~ 2. (생략) ② ~ ④ (생략)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부터 <u>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b>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 ① (현행과 같음)</b>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 계획서,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 제17조제3항에서는 기구가 시장에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구는 사업 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사업 결과 및 정산서**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붙임1 참고).

**<최근 3년간 기구(WeGO) → 디지털정책관 자료제출 현황>**

일 자	내 용	근거규정
2022. 1.19.	▶ 2022년 WeGO 주요사업계획(최종) ▶ 2022년 1분기 예산교부 신청서 ▶ 2022년 1분기 사업예산 세부내역 ▶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b>조례 제17조제3항</b>
2022. 1.21.	▶ 2021년도 WeGO사무국 국제부담금 정산보고서 및 사업결과	
2022. 8.16.	▶ 2023년 WeGO 주요사업계획(안)	
2023. 1.16.	▶ 2022년 WeGO사무국 국제부담금 정산보고서 및 사업결과 ▶ 2023년 WeGO사무국 주요사업계획(최종)	
2023. 7.19.	▶ 2024년 WeGO 주요사업계획(안)	
2023.10.23.	▶ 2024년 WeGO 주요사업계획(안)_수정제출	
2024.1.25.	▶ 2023년 WeGO사무국 국제부담금 정산보고서 및 사업결과	

※ 출처 : 디지털정책관 제출자료 정리

- 한편, 제17조제5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시장이 기구로부터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디지털정책관은 매년 11월 기구의

---

1) 2010년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로 공식 창립하여 2017년 러시아 울라놉스크 주에서 열린 제 4차 WeGO 총회에서 세계스마트시티기구로 개명하였음.  
 2)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 ① 시장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이하 "기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기구 사무국 파견

다음연도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오고 있으며, 2~3월에는 기구의 전년도 사업 정산서와 당해연도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오고 있는 상황임.

<최근 3년간 디지털정책관→서울시의회 자료제출 현황>

일 자	내 용	근거규정
2022.11. 7.	▶ 2023년 WeGO 주요사업계획(안)	조례 제17조제5항
2023. 3.17.	▶ 2022년 국제부담금 정산서 ▶ 2023년 WeGO 주요사업계획	
2023.11.17.	▶ 2024년 WeGO 주요사업계획(안)	
2024. 2. 6.	▶ 2023년 국제부담금 정산서 ▶ 2024년 WeGO 주요사업계획	

※ 출처 : 디지털정책관 제출자료 정리

- 따라서, 현행 규정상 시장은 기구로부터 사업 계획서와 사업 결과,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음에도 시의회에는 사업 계획서와 사업 정산서만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17조제5항에서는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업결과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시장이 사무총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사업 계획서, 사업 결과, 사업 정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는 것은,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 제고 외에도 세부 사업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기구의 투명한 운영과 발전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 개정안에 따른 보고내용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보고내용	없 음	▶ 시장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고문서 : 사업계획서, 사업정산서, 사업결과

- 다만,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정책관은 사업 계획서의 경우 매년 2회(전년도 7월 및 당해 연도 2월), 사업결과와 사업정산서의 경우 매년 1회(다음 연도 2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제기구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다소 경직된 운영을 초래하여 회원국들에게 과도한 관리·감독으로 비춰져 글로벌 공신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디지털정책관의 의견<sup>3)</sup>이 제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도모하고 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고시기를 연초로 일원화하는 등의 개정안 수정도 검토가 가능하겠음.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세계스마트시티 기구의 활동지원을 위해 기구 사무국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의 원활한 관리감독 및 업무과약을 도모하고자 기구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구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매년 서울시의 인력과 자원(국제 부담금)이 투입되는 가운데, 성과기반의 사무국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정부의 국제기구 부담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 부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국제기구 운영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고의무’ 신설로 인해 국제기구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디지털정책담당관-4880(2024.04.18.),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참고로, 기구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21년도 대비 195% 증가), 회비징수율('23년도 30.2%로 '21년도 대비 4.2%p 증가) 및 징수액('23년도 222,296천원으로 '21년도 대비 8.5% 증액)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며, '23년도 기준 기구의 회원국 회비가 서울시 지원액(국제부담금)의 12.9%에 불과한 실정인바(붙임3 참고), 선진도시 및 대기업 회원 유치 등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등 회비 납부율 증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부담금 비중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2019~2023년도 WeGO 예산 및 회비 비율>

구 분	WeGO 총예산(A) (A=B+C)	서울시 지원액(B) (국제부담금)	회비(C)	회비 비율(D) (D=C/A*100)
2019	1,383,123천원	1,194,572천원	188,551천원	12.6%
2020	1,439,129천원	1,262,000천원	176,629천원	12.3%
2021	846,089천원	641,238천원	204,851천원	24.2%
2022	825,720천원	641,238천원	184,482천원	22.3%
2023	1,943,906천원	1,721,610천원	222,296천원	11.4%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법조사관 전재성	02-2180-8205

[붙임1] 관계법령(p.7)

[붙임2]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운영 현황(p.9)

[붙임3]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지원 및 회비징수 현황 (p.11)

■ 「지방자치법」

제10장 국제교류·협력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등의 제출)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이하 “납부실적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납부실적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2. 해당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5. 그 밖에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 ① 시장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이하 "기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기구 사무국 파견
-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 사무국의 사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기구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검토하여 지원 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립근거**

- 2010년 9월 7일 WeGO 서울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헌장
  - 2010년 세계 50개 도시 시장 및 대표단 등 1,000여 명 참석해 WeGO 헌장 의결 및 설립

**□ 창립배경**

- 서울시의 세계 전자정부 선도도시로서 국제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 인식
  -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서울시 7회 연속 1위 수상('03~'09)
- 서울시 주도 세계 도시 간 전자정부 교류·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단체 창립 추진

**□ 주요역할**

- 세계도시 간, 도시 및 기업 간 스마트시티 협력·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통한 회원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혁신 지원
- 스마트시티 지식 공유·전파 및 세계 도시·글로벌 기업간 협력사업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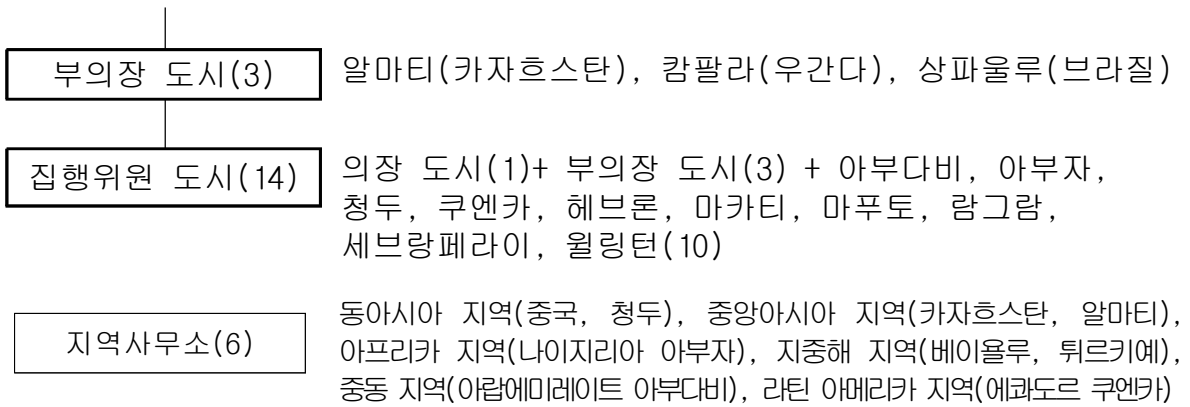
**□ WeGO 회원 현황 : 201개 도시·기업·기관 회원**

회원 구분	합계	대륙별 분포
총 계	201	아시아 95, 오세아니아 3, 미주 15, 유럽 20, 중동 12, 아프리카 56
도 시	164	아시아 71, 오세아니아 3, 미주 15, 유럽 16, 중동 12, 아프리카 47
기 관	18	아시아 8, 유럽 2, 아프리카 8
기 업	19	아시아 16, 유럽 2, 아프리카 1

**□ 조직구성**

- 의장도시, 부의장 도시, 집행위원 도시로 구성
  - 집행위원회는 매년, 총회는 3년마다 개최 \* 제6차 총회 개최('23.9.26., 서울시청)
    - ※ 집행위 : 신규회원 및 예산 승인, 사업성과 검토 등
    - ※ 총 회 : 정관개정, 의장·집행위 위원 선출, 다음 총회 도시 결정 등

**의장 도시(서울시)** 의장 : 서울시장 \* 임기 : 2023~2026



□ 사무국 현황

- '24년 운영예산 : 2,138,110천원(市지원 1,721,610천원 /회비 : 416,500천원)
- 설치 및 운영근거
  - WeGO 헌장 제13조 : 사무국은 서울시에 두며, 기구의 연간활동과 재정사항을 집행위에 제출하고 회원도시에 서비스 제공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7조(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
- 운영기간 : 2014. 1월 ~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서 WeGO 운영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7층(종로구 서린동 소재)
- 조직구성 : 총11명(사무총장, 사업부 8명, 행정운영부 市 파견 2명)
  - 사업부 : 수석 1명, 대리 7명



**붙임3****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지원 및 회비징수 현황****〈 2019-2024 서울시 국제부담금 및 인력 지원내용 〉**

연도	시 지원액 / 파견인력
2019	1,194,572천원 / 5급(1명), 6급(1명)
2020	1,262,500천원 / 5급(1명), 6급(1명)
2021	641,238천원 / 5급(1명), 6급(1명)
2022	641,238천원 / 5급(1명), 6급(1명)
2023	1,721,610천원 / 5급(1명), 6급(1명)
2024	1,893,493천원 / 5급(1명), 6급(1명)

**〈 2019-2024 WeGo 회원국 회비징수 현황 〉**

구 분	징수대상	납부수	징수율(%)	징수액
2019	145	43	29.7	188,551천원
2020	184	35	26	176,629천원
2021	208	38	26	204,851천원
2022	177	25	25.2	184,482천원
2023	176	33	30.2	222,296천원